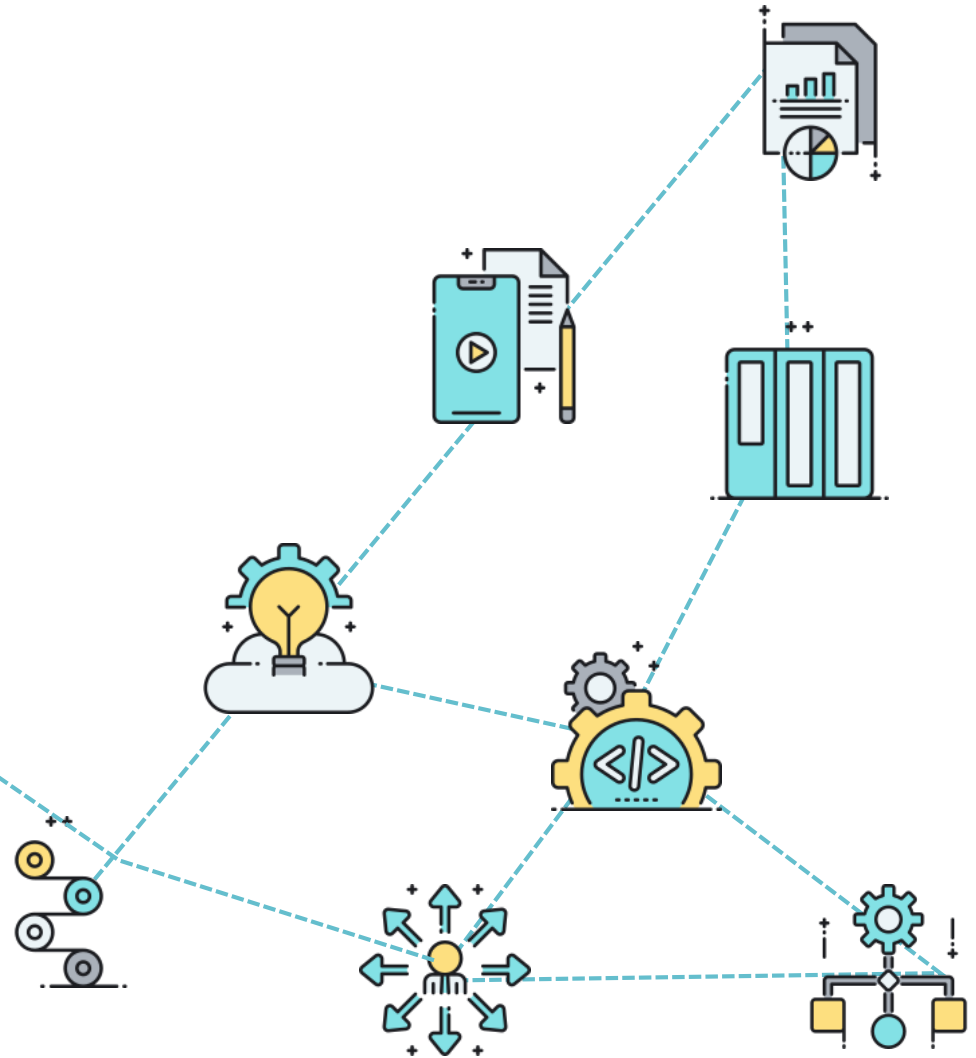


축산 ICT융복합 확산 참여기업 교육



I. 사업지침 변경사항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규정

컨설팅 기관

- 2020년 컨설팅 운영기관수 확대(2개)
- 운영기관별 권역 분담

가 컨설팅 기관

컨설팅기관명	담당 권역	매뉴얼 제작 배포
해숲식품안전솔루션	경기(인천), 강원, 전남(광주), 전북, 제주	○(4월, 11월 2회)
(주)호현에프앤씨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북(대구), 경남(울산, 부산)	-

나 기존 농가 컨설팅

- 해당권역의 기관에서 컨설팅을 배정 받아 수행하고, 해당 권역 컨설팅기관에 보고(보고방법은 컨설팅기관 개별통지)
- 기존 수행농가는 기존 활동 컨설턴트가 수행(단, 컨설팅 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 30%범위에서 수정 가능)
(따라서 컨설턴트 **반드시** 해당 기관 컨설팅 기관에 **재배정 통보**를 받아야 함)

다 매뉴얼 배포

- (주)해숲식품안전솔루션에서 일괄 제작하여 컨설턴트에게 배포
- 단, 호현에프앤씨 권역은 호현에프앤씨에서 수령하여 배포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근거 법령
- 사업 성과목표·지표 및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현황

○ 사업 지침 및 규정

가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나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달성

1-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규정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 및 지원대상
- 사업자금 지원 형태 및 지원 범위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축산법 제 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m²/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2020년 부터 양봉, 곤충 분야 추가(단, 컨설팅은 미실시)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 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융복합 장비
-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다 우선지원 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축종별)의 형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저점수가 존재하는 경우 있음(최저 점수 40점))
- ICT 약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 및 지원대상
- 사업자금 지원 형태 및 지원 범위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라 지원제외

-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2)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로 분류)
(단, 사업 완료시까지 합법적 허가 또는 철거 등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3)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4) 19.1월 이후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5)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6) **최근 2년 동안 본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8)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9)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계란, 닭고기, 오리)**
- 10) 사전컨설팅에 대한 협조가 안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체**

사용용도 지원대상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장비 대상

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나 지원 대상 장비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축산 ICT융복합 확산 지원 장비 안내

사업용도
지원대상

- 축종별 지원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 품목

○ 양돈, 양계, 낙농분야 주요 내용

분야	양돈	양계(산란계/육계)	양계(종계)	낙농
지원대상	축산업등록 경영체	축산업등록 경영체	축산업등록 경영체	축산업등록 경영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급이기 ▪ 자동급이기 ▪ 사료믹스급이기 ▪ 컴퓨터액상급이기 ▪ 돈선별기 ▪ 사료빈관리기 ▪ 음수관리기 ▪ 모돈발정체크기 ▪ 환경관리기 (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팬, 쿨링패드, 냉방기, 난방기) 농장 기상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 CCTV, 차량출입장치 ▪ 악취저감장치 ▪ 분노처리장치 ▪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기 ▪ 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 포함) ▪ 자동급수기(음수관리기 포함) ▪ 난선별기 ▪ 체중기 ▪ 사료빈관리기 ▪ 음수관리기 ▪ 계사환경관리기 (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팬, 쿨링패드, 냉방기, 난방기 등) ▪ 농장 기상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 CCTV, 차량출입장치 ▪ 악취저감장치 ▪ 분노처리장치 ▪ 양계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포유기 ▪ 체중측정기 ▪ 발정탐지기/분만알리미 ▪ 착유기 ▪ 로봇착유기 ▪ 자동급이기(개체급이정보 포함) ▪ 음수관리기 ▪ 사료빈관리기 ▪ 조사료분석기/유성분 분석기 ▪ TMR배합기 ▪ 환경관리기, 농장기상대 (온도, 습도, 강우, 풍속, 화재 등) (팬, 안개분무기, 천장개폐기, 윈치커튼) ▪ CCTV ▪ 차량출입장치 ▪ 축분건조기 ▪ 낙농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 축종별 지원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 품목

○ 한우, 오리, 사슴분야 주요 내용

분야	한우	오리(육용/종)	사슴(엘크/꽃사슴/레드디어)
지원대상	축산업등록 경영체	축산업등록 경영체	축산업등록 경영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포유기 ▪ 체중측정기 ▪ 발정탐지기/분만알리미 ▪ 자동급이기 (급이량측정장치 포함) ▪ 음수관리기 ▪ 사료빈관리기 ▪ 조사료분석기 ▪ TMR배합기 ▪ 환경관리기, 농장기상대 (온도, 습도, 정전, 화재등) (팬, 안개분무기, 천장개폐기, 윈치커튼) ▪ CCTV ▪ 차량출입장치 ▪ 축분건조기 ▪ 한우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기(종오리의 경우에만 해당) ▪ 사료자동급이기 ▪ 음수자동급이기 ▪ 사료빈관리기 ▪ 음수관리기 ▪ 환경관리기 (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 CCTV ▪ DVR+모니터 ▪ 농장기상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 통신중계기 ▪ 데이터수집기(G/W) ▪ 오리시설제어관리 프로그램 ▪ 오리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급이기 ▪ 음수관리기 ▪ 사료빈관리기 ▪ 환경관리기 (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 CCTV ▪ DVR+모니터 ▪ 통신중계기 ▪ 데이터수집기(G/W) ▪ 사슴시설제어관리 프로그램 ▪ 사슴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PC

- 축종별 지원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 품목

나 지원 제외 사례

- ❖ **법,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또는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서 설치한 제품**
(지침 : KC인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해당제품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 **ICT 기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지침 : 타 장비와의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제외)
(지침 :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사례 : 한우 자동 급이기 설치 시 '수동 제어 시설' 로 설치하여 **원격제어가 안되고, 급이량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 팀뷰어 등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작 제어하는 경우, CCTV 등)
(사례 : 정전, PC 전원 Off시 데이터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 ❖ **농정원 정보연계가 불가능 한 장비**
(사례 : 인터넷통신기능이 없어 외부 정보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사례 : Agent를 설치해도 정보연계가 불가능, 접근가능한 DB폴더 부재, 자동 엑셀다운로드기능 부재(수동은 안됨)
(사례 : Raw Data 암호화로 해당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ICT장비를 위한 보조시설**
(사례 : 환경관리기에서 '우레탄 공사 비용')
(사례 : 지붕개폐기 설치 시 천정 공사 비용)
(사례 : 윈치커튼 공사시 천막 비용)

축산 ICT융복합 확산 지원 장비 안내

사업용도
지원대상

- 축종별 지원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 품목

○ 양돈, 양계, 낙농분야 주요 내용

분야	양돈	양계(산란계/육계)	양계(종계)	낙농
지원한도	1억원/천두 한도 15억원	1억원/3만수 최대한도 15억원	1억원/1만수 최대 한도 15억원	1억원/50두 최대한도 15억원
(일반형)	3천만원/천두 한도 2억원	3천만원/3만수 한도 2억원	3천만원/1만수 한도 2억원	5천만원/50두 한도 2억원
최소조건	700두 이상	20,000수 이상	10,000수 이상	30두 이상
지원조건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용자금액의 일부 지방비 보조 가능

- 축종별 지원 가능한 ICT융복합 장비 품목

○ 한우, 오리, 사슴분야 주요 내용

분야	한우	오리(육용/종)	사슴(엘크/꽃사슴/레드디어)
지원한도	1억원/50두 최대한도 15억원	1억원/2만수 한도 15억원	엘크 : 1억원/30두, 최대한도 10억원 꽃사슴 : 1억원/100두, 최대한도 10억원 레드디어 : 1억원/40두, 최대한도 10억원
(일반형)	5천만원/50두 한도 2억원	3천만원/2만수 한도 2억원	엘크 : 5천만원/30두, 한도 2억원 꽃사슴 : 5천만원/100두, 한도 2억원 레드디어 : 5천만원/40두, 한도 2억원
최소조건	30두 이상	15,000수 이상	엘크 : 20두 이상 꽃사슴 : 70두 이상 레드디어 : 40두 이상
지원조건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용자금액의 일부 지방비 보조 가능

1-10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규정

사업용도 지원대상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 지원형태 및 지도한도액 범위

가 지원형태 및 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지원한도액 및 범위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20,000수), 사슴(엘크 30두,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5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관리규정

▪ 보조금 관리 및 사후 관리

○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관리규정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를 설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거하여 관리
- 컨설팅 세부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공문(내부결재),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한다.

나 사후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1-12 축산 ICT융복합 장비 및 관련 기술 축산 ICT융복합 지원 장비 안내

관리규정

▪ 보조금 관리 및 사후 관리

○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

구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 시도별 사업량, 지원예산 확정 ▪ 예산 확보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지침 수립 지원 ▪ 사업관리, 컨설팅 및 평가의 시행 ▪ 본 사업과 관련된 공통인프라 운영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성과 평가계획 수립. 시행 ▪ 농정심의회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시군 통보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제출 사업계획 신청서 적격 여부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선정결과 사업대상자 통보
컨설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필요 ICT 융복합 시설 컨설팅 ▪ 시설운영 기술지원, 보급된 장비의 정상 운영확인결과 시군 제출 ▪ 경영성과를 측정 설계 및 자료 수집 등
농업경영체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신청서 작성 및 시군 제출 ▪ 융자희망농가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1-13 축산 ICT융복합 장비 및 관련 기술

축산 ICT융복합 영세율 적용 장비

사업용도
지원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 영세율 적용 장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1)계란선별기	41)축산분뇨고액분리기
2) 양계용케이지	22)삭제 <2008.2.22>	42)삭제 <2008.2.22>
3) 축산급이기	23)삭제 <2008.2.22>	43)축산분뇨발효건조기
4) 삭제 <2008.2.22>	24)집란벨트	44)축산분뇨살포기
5) 삭제 <2008.2.22>	25)부화기	45)축산분뇨저장탱크
6) 자동급수기	26)착유기	46)축산분뇨포장기
7) 니플	27)삭제 <2008.2.22>	47)산란상
8) 부리절단기	28)삭제 <2008.2.22>	48)난좌
9) 포유기	29)원유냉각기	49)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10)양돈케이지	30)삭제 <2008.2.22>	50)사료통
11)삭제 <2008.2.22>	31)사료배합기	51)벌통
12)삭제 <2008.2.22>	32)TMR배합기	52)채밀기(採蜜器)
13)이표기	33) 사료절단기	53)소초(巢礎)세트 [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4)삭제 <2008.2.22>	34)싸이로	
15)삭제 <2008.2.22>	35)삭제 <2008.2.22>	
16)임신진단기	36)사료저장탱크	
17)음수투약기	37)축산분뇨제거기	
18)목책기	38)축산용 정화조	
19)삭제 <2008.2.22>	39)축산분뇨용 교반기	
20)집란기	40)축산용 분뇨펌프	

1-13 축산 ICT융복합 장비 및 관련 기술

축산 ICT융복합 부가세환급 적용 장비

사업용도
지원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가세가 환급되는 장비

장비업체별로 신고품목이 다르므로 컨설팅 매뉴얼 참고하여 진행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41. 축사용 쿨링 패드**
-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장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5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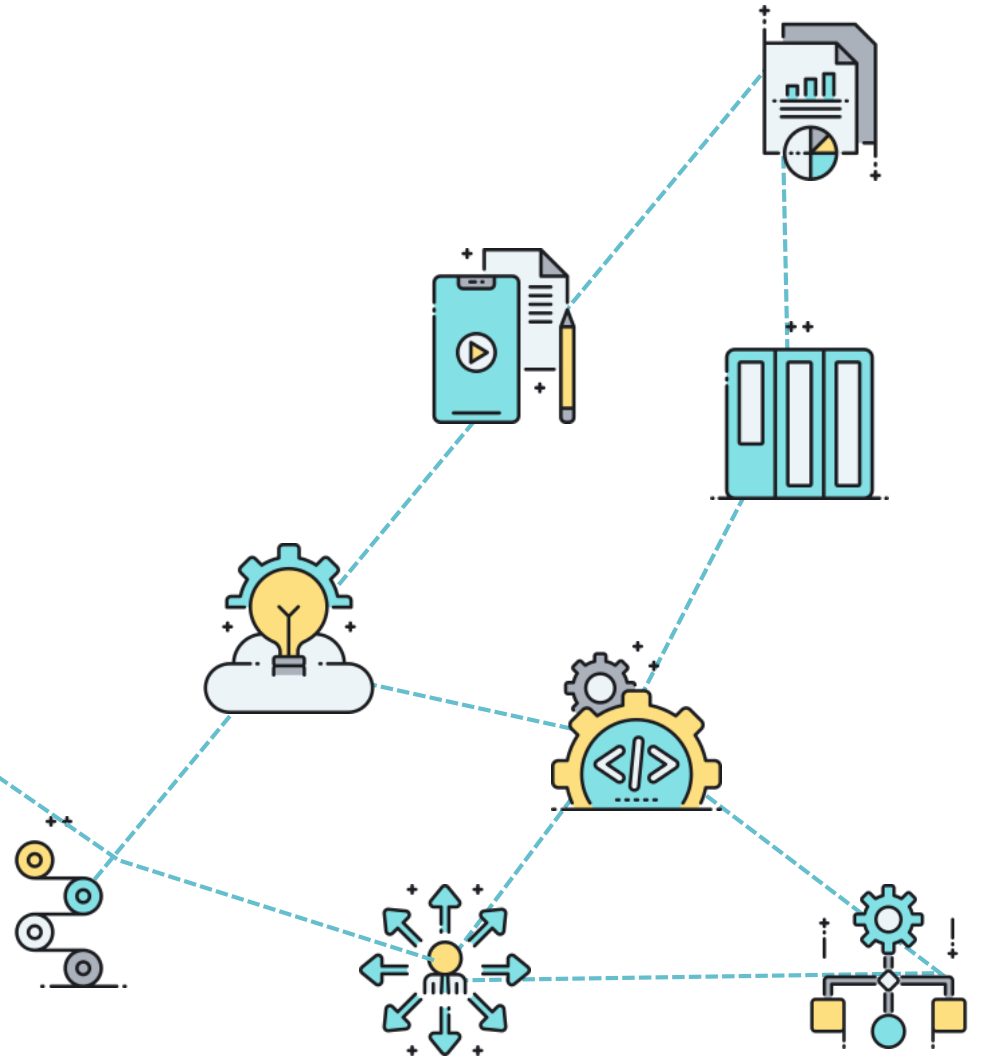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비 : 부가세 없이 사업비 산정
- ❖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장비 : 부가세를 농가가 선부담하고 향후 환급
- ❖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장비 :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업비 반영

<계산 사례>

<영세율 장비 : 3천만원, 부가세 환급장비 5천만원, 부가세 미환급장비 1억원>

- ❖ 보조사업비 : 1억 8천만원
- ❖ 업체계약 총액 : 1억 8천 5백만원
- ❖ 부가세 추가 부담 : 5백만원(해당 금액은 향후 세무서에 환급신청)

I. 축산 ICT 확산사업 신청방법



2-1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규정

컨설팅
진행과정

- ICT융복합 확산 컨설팅은 사전점검, 시설점검, 확인점검의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진행

ICT활용컨설팅 = 사전점검 / 시설점검 / 확인점검 3단계 과정

사전점검 컨설팅

- 확산사업 행정사항 안내
- 농가현장평가 자료 수집 및 평가지원
- ICT 융복합 장비 및 기술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2회(4시간)



시설점검 컨설팅

- 계약사항 점검
- 설치진행상황 점검
- 장비활용 교육

2회(4시간)



확인점검 컨설팅

- 설치완료 점검
- 우수사례발굴
-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대효과 산출

1회(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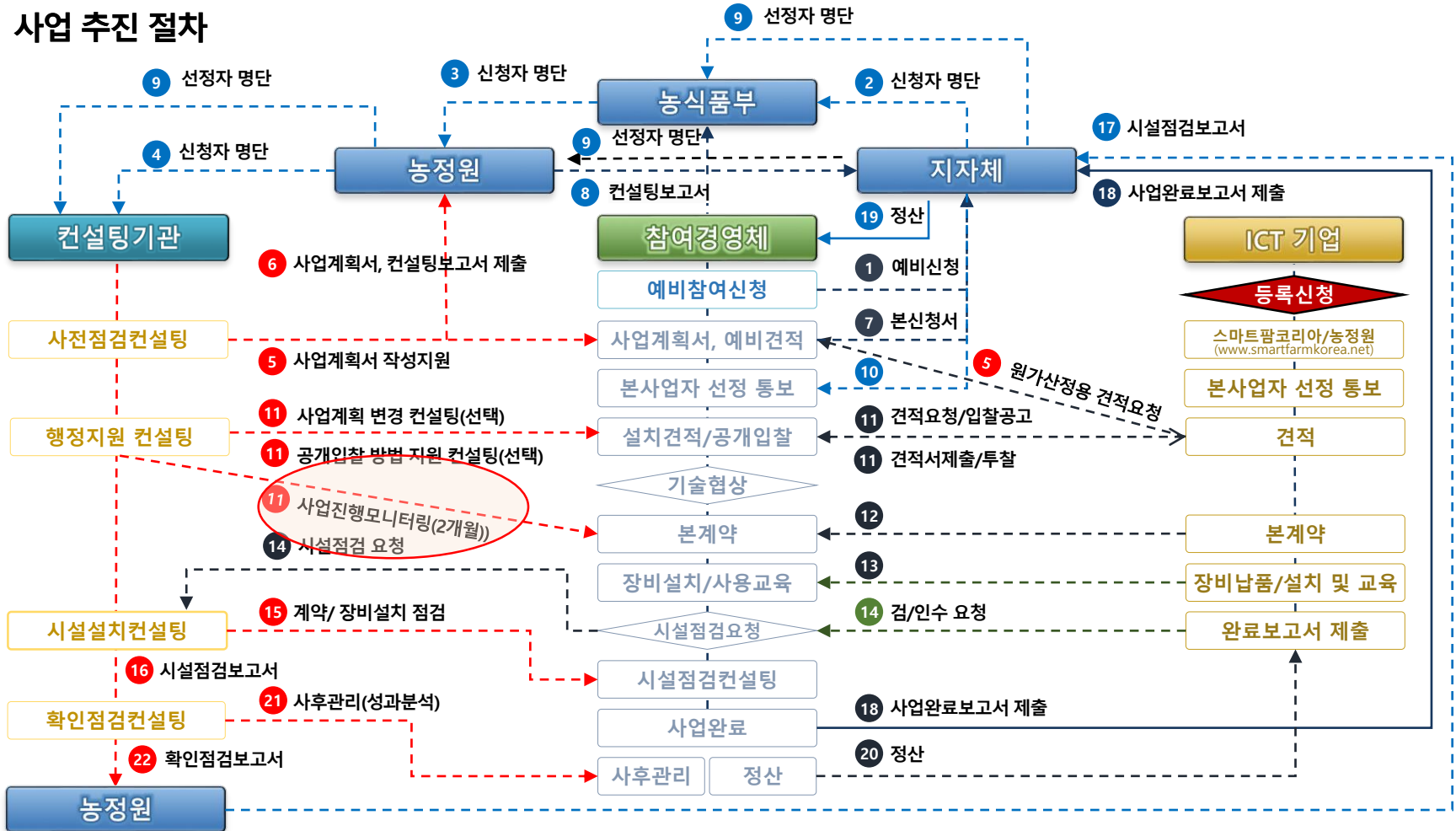
2-2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추진
절차

- 농가는 보조금 교부일로 부터 2개월이내 계약 진행 필요

○ 사업 추진 절차



2-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프로세스

■ 사업 신청 단계 프로세스(예비 신청)

○ 사업신청 프로세스

가 예비 신청 절차



나 예비 신청 안내

- 예비신청 - 수시 신청 가능, 신청 양식 작성 제출(지자체)
- 지자체 담당자 매월 말일에 수요자 일괄 취합 후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
- 컨설팅 기관은 전담 기관으로부터 수요자 명단 수령 후, 컨설팅 계획 수립 후 방문
- 컨설팅 기간 - 11개월~2년 소요

2-4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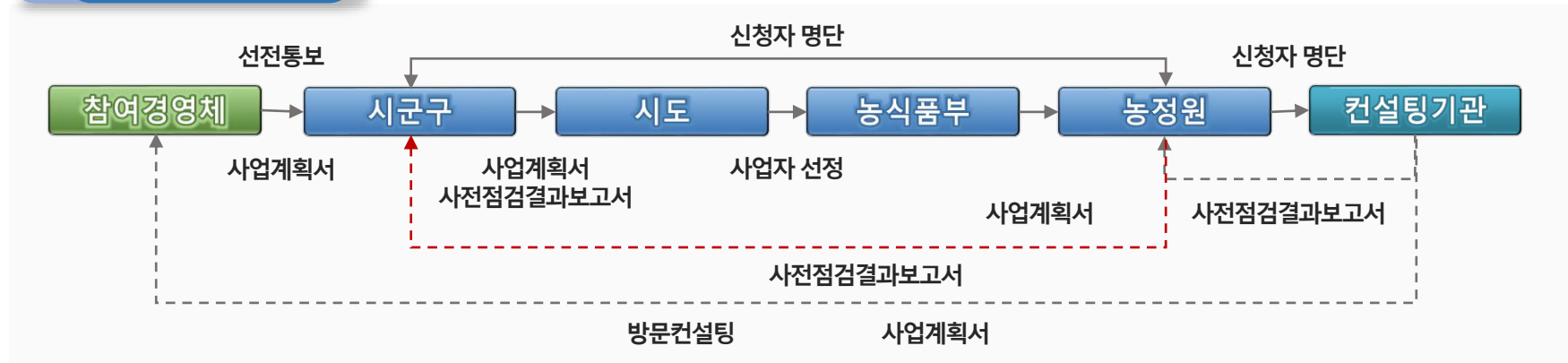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사전점검 프로세스

- 축산농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축산농가가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전점검 프로세스

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나 사전점검컨설팅 실행절차

사전연락	1차 방문	중간보고서	2차 방문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 소개 ▪ 기본 지침 안내 ▪ 준비서류 안내 ▪ 방문 일정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침 소개 ▪ ICT 장비 소개 ▪ 준비 서류 수령 ▪ 장비도입 컨설팅 ▪ 전산관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분석 ▪ 계획서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진단 컨설팅 ▪ 장비도입 컨설팅 ▪ 사업계획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평가표 작성

2-5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프로세스

▪ 사전 점검 행정 절차

○ 사업 주체별 사전점검 행정절차 및 선정 후 사업 진행 안내

가 컨설턴트

- 신청자 명단 수령
- 경영체와 일정 협의-서류 준비 요청
- 농장방문 - 현황파악
- 사업의 경제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결과보고서 작성

나 경영체

- 컨설턴트 기관과 방문 일정 협의
- 서류 준비, 제출
- 사업계획서작성(작성지원), 지자체 제출
- 선정 통보 받은 후 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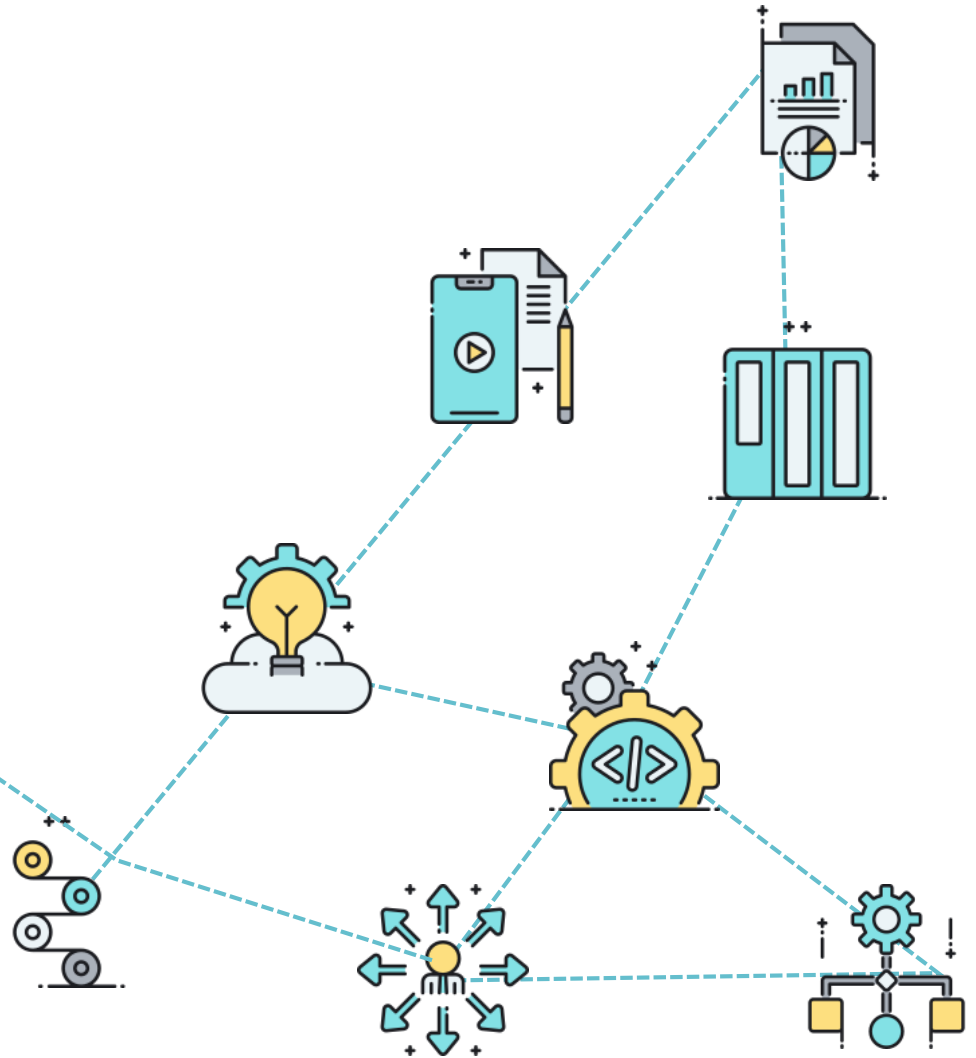
다 지자체

- 사업계획서 및 사전점검결과보고서 접수
- 농식품부, 전담기관 통보
- 선정 여부 경영체 전달

다 필수 제출 서류

- 경영체는 사업자 선정 통보 후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 반드시 스마트팜 등록 업체 계약
- 1억 초과시 공개 입찰 진행 : 직접 진행(나라장터 활용) / 행정 지원(컨설턴트)
-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동일 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반드시 표준계약서 작성

I. 사업계획서 작성 (본신청) 및 선정



3-1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전점검
프로세스

- 사업계획서 양식 - 직접 작성 또는 작성 지원

한우

[첨부 2-6] 사업계획 신청서(한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연락처 (핸드폰)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총 사육두수									두
	암소비육	두	22개월 이상(비육후기)		두					
	경산우(분만경험우)	두	12~21개월(비육전기, 중기)		두					
	암소 초임우(초임~분만전)	두	수소	6~11개월(육성기)		두				
	육성우(6개월령~초임전)	두	송아지(6개월령 이하)		두					
	송아지(6개월령 이하)	두	소 계		두					
소 계										
축사 현황	축사	퇴비장	운동장	사료포	창고	기타	계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 등의	한국농축개발협회의 한우개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성적(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산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낙농

[첨부 2-5] 사업계획 신청서(낙농)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연락처 (핸드폰)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납유기관									
	사육 두수	낙유우		건유우	육성우	중송아지	어린송아지	합계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사육면적			우상형태			낙유시설			
	낙유우사	m ²	관리사	m ²	툽밥	파이프라인				
	건유우사	m ²	일괄사육	m ²	후리스틀	텐던				
	육성우사	m ²	계류			헤팅본				
	퇴사	m ²	기타			로봇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 등의	낙농진흥회, 농협, 낙농육우협회 등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산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3-2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전점검
프로세스

- 사업계획서 양식 - 직접 작성 또는 작성 지원

양돈

[첨부 2-1] 사업계획 신청서(양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팔(), 번식(), 비육(), 기타()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번식돈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비육돈		총 사육 두수
		모돈	중돈	포유	이유	육성	비육	총	사육	두수
축사 현황	임신사(번식/중부)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	
	스톨	개	분만통	개	분방	개	분방	개	개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m ²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신채)	자부담			
정보활용 등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양계(산란계)

[첨부 2-2] 사업계획 신청서(산란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산란계(), 기타()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		명아리		육성계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개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m ²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신채)	자부담			
정보활용 등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3-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선정기준표
공통 항목

-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공통항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시설조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임대차인 경우는 사업착수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융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 공사 진행 중인 농장 전문기관으로부터 ICT융복합 축사설계컨설팅을 받고, 설계가 완료된 경우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교육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50일 이상 30일 이상 ~ 50일 미만 5일 이상 ~ 30일 미만 	10 7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현장설명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설명회 참여 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정원 주관 실적
전산기록 관리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2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전산관리 있는 경우 	20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별 전산 데이터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 보고서 제출
정기적인 컨설팅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소모성 질병,생산성 향상종합컨설팅등2년 이상받은 경우 농업경영,소모성 질병,생산성 향상종합컨설팅등1년 이상받은 경우 농업경영,소모성 질병,생산성 향상종합컨설팅등1년 미만받은 경우 	10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 계약서 사본 제출

3-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선정기준표
공통 항목

-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공통항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가축공제 가입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공제 가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HACCP 지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지정은 식품안전기준원에 한함
농가 후계자 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후계농 선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발급 증명서
자가 전산 관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에서 전산관리를 직접 입력 관리한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턴트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사료회사가 대행 입력시 0점)
동물복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복지인증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친환경 축산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인증서 (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 개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축산농장지정서 (축산환경관리원)

3-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선정기준표
축종별 항목

-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축종별항목)

평가항목	축종	세부기준	배점	비고									
생산성 향상	낙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유량 35kg/일/두 이상 착유량 30kg/일/두 이상 착유량 25kg/일/두 이상 착유량 25kg/일/두 미만 	10 7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육성율 99% 이상 출하육성율 95% 이상 출하육성율 94% 이하 	10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산란계 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란지수 300 이상 산란지수 280 이상 산란지수 279 이하 	10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산란지수:365일 기준 산란개수 									
	양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MSY 23두 이상 (비육) 1등급 80% 이상, (번식) PSY 26두 이상 MSY 20두 이상 ~ 23두 미만 (비육) 1등급 65 ~ 79%, (번식) PSY 23 ~ 26두 MSY 20두 미만 (비육) 1등급 65% 미만, (번식) PSY 23두 미만 	10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기준(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MSY 산출이 불가능한 비육전문농장은 1등급 출현율, 번식전문 농장은 PSY기준으로 평가 									
	한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거세우</th> <th>암소</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70% 이상</td> </tr> <tr> <td>80% 이상</td> <td>60% 이상</td> </tr> <tr> <td>70% 이상</td> <td>50% 이상</td> </tr> <tr> <td>70% 미만</td> <td>50% 미만</td> </tr> </tbody> </table>	거세우	암소	90% 이상	70% 이상	80% 이상	60% 이상	70% 이상	50% 이상	70% 미만	50% 미만	10 7 5 3
거세우	암소												
90% 이상	70% 이상												
80% 이상	60% 이상												
70% 이상	50% 이상												
70% 미만	50% 미만												

3-4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선정기준표
축종별 항목

-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축종별 생산성 항목)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 ~ 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0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3-5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전점검
프로세스

- 사업계획 작성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필수서류 누락 시 본 신청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본 신청)시 필수서류

구 분	필수여부	발행기관	비고
1. 축산업등록증	○	-	
2. 신용조사서	○	농축협	용자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예금평잔확인서	○	해당 은행	
4. 토지 등기부등본	○	시,군,구청	
4-1. 임대차 계약서	X	-	타인 토지에서 축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4-2. 가족관계 증명서	X	읍면동사무소	직계가족의 토지에 축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5. 건축물 관리대장	○	시,군,구청	
6. 건축설계 도면(평면도)	○	설계사무소/건축물대장	
7. 사업계획서	○	(주)호현F&C(컨설팅기관)	사전 점검 컨설턴트 작성 지원
8. 사전점검 컨설팅확인서	○	(주)호현F&C(컨설팅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X	등기소	법인인 경우에 한함

3-5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사전점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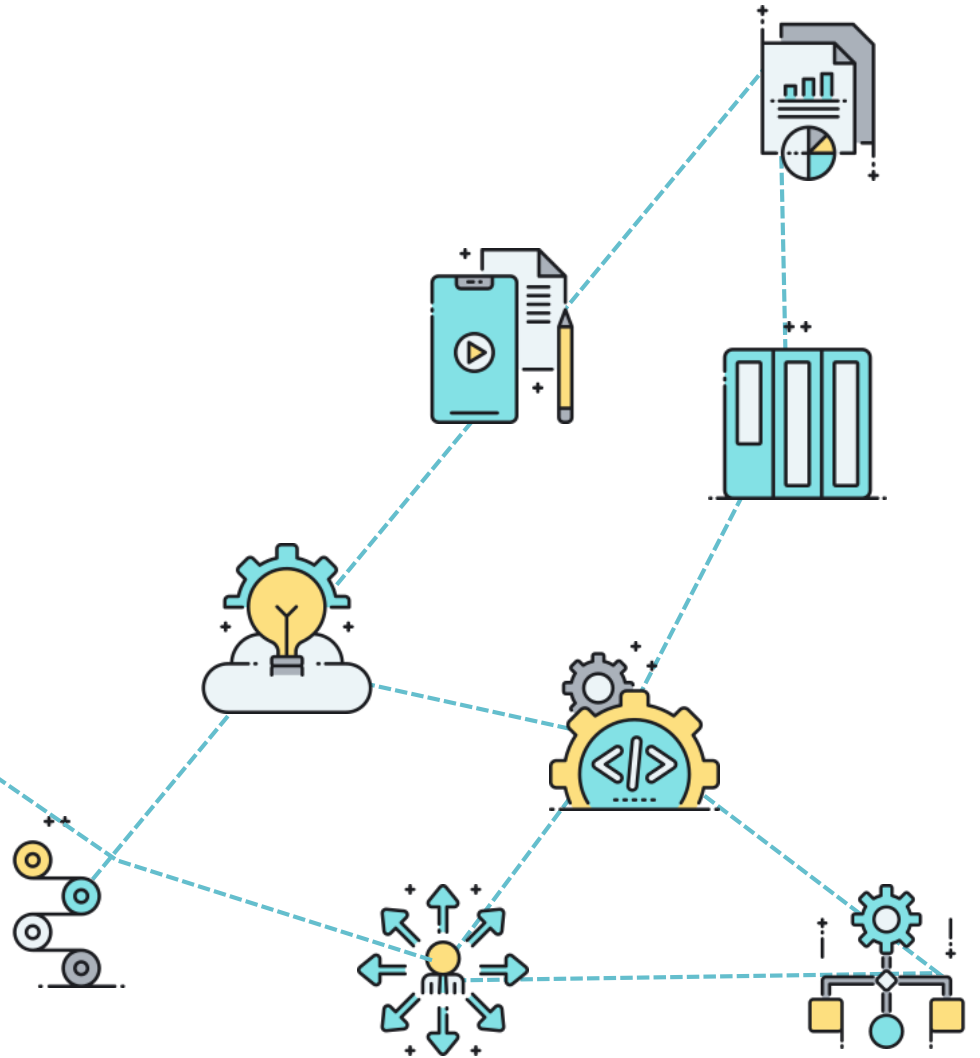
- 사업계획 작성 시 선정 우위를 위한 추가서류는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로 컨설턴트가 사전점검컨설팅 방문시 배부하는 컨설팅매뉴얼에 상세히 기재

○ 사업계획서 작성(본 신청)시 선정 우위를 위한 추가서류

구 분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비고
1. 월별 가축 사육 현황표(1년치)	사육현황	사육일지	농장 개체이력현황표(축협)		
2. 월별 사료이용통계(1년치)	사육단계별, 사료유형별로 월별 사용량/사용금액 표시(사료회사)				
3. 도체등급 판정결과(1년치)	도체등급판정 (축평원)	-	연간검정데이터 유성분(납유처)	도체등급판정 (축평원)	
4. 출하/판매 대금 정산서	정산서(판매처)	정산서(판매처)	납유정산서(납유처)	정산서(판매처)	

구 분	필수여부	발행기관	비고
1. 졸업증명서	X	해당 학교	농고, 농축산 계열 졸업자에 한함(제출시 10점)
2. 현장설명회 수료증	X	교육 기관	스마트팜 교육(제출시 최대 5점)
3. 전문 컨설팅 확인서	X	동물병원, 컨설팅회사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최대 10점)
4. 가축공제보험 증서	X	농축협	제출시 5점
5. HACCP 인증서	X	HACCP인증기관	제출시 5점
6. 영농 후계자 확인서	X	시군청	제출시 5점
7. 전산기록(연간종합실적표)	X	생산경영SW	3년치 제출시 최대 20점

I. 장비업체 선정 및 계약



4-1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계약시 주의사항

- 제품의 수명을 고려한 AS조건, 업체 부도 등을 고려한 행정서류 수취

- ❖ **반드시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공개입찰 대상은 3개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가축질병, 신축축사) 발생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 ❖ **반드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할 것(자금집행, 공사기간 명기)**
- ❖ **반드시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과 계약 진행**
- ❖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은 사전 승인(지자체)**
- ❖ **계약금 수령 전 계약이행보증증권 제공**
- ❖ **잔금 수령 전 하자보수이행증권 제공**
- ❖ **계약서에 공식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도 등록된 기업만 가능**

4-2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규정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조건 및 방법

가 사업계획 변경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2.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3.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4.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나 변경 컨설팅 대상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4-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공개입찰
지원기준

- 국고보조금 관리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적용

가 재정관리 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조금 총액기준임)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0.02.27일 제정(훈령 제 352호)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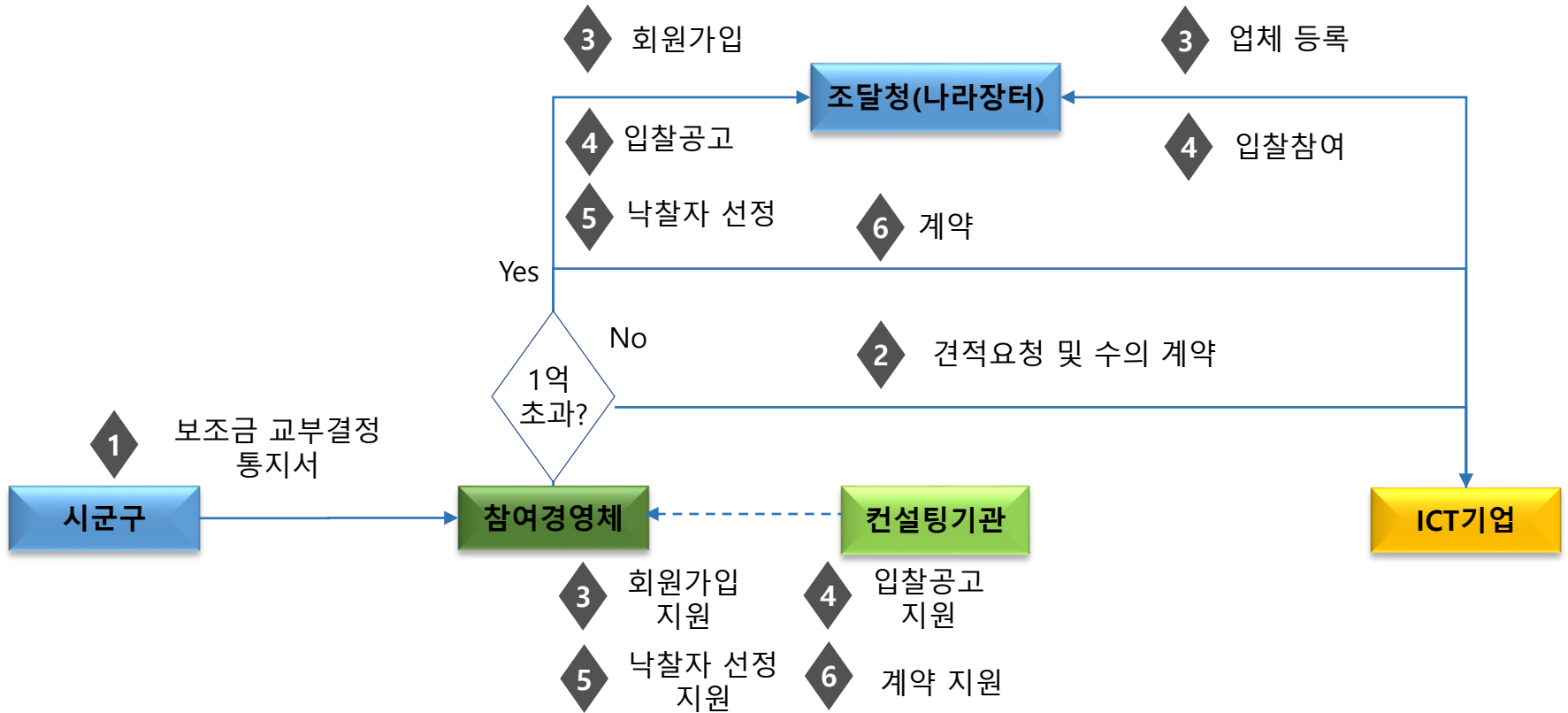
4-4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공개입찰
지원기준

▪ 공개입찰지원 기준



4-5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공개입찰
지원기준

▪ 공개입찰지원 기준

○ 참여경영체와 ICT기업 간 계약 방법

- 총 사업비 1억 이하 수의 계약 진행
- 물품 2천만원 초과 또는 총 사업비 1억 초과 시 모든 장비 공개 입찰 진행 - ① 직접 진행 → 나라장터 매뉴얼 참조
- ② 컨설턴트 행정지원

구 분	수의계약	공개입찰
표준계약서	○	○
일반계약조건	○	○
설계도면	○	○
시방서	○	○
원가계산서 (견적서)	○	○
사용자 설명서 (매뉴얼)	○	○
입찰공고문	X	○
입찰유의서	X	○
계약특수조건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4-6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나라장터
이용방법

▪ 나라장터 이용방법 프로세스

STEP. 1 회원가입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구비 (지자체 발급)
- 회원가입 정보 입력
- 수요기관 등록신청서 팩스 제출
- 이메일 결과 확인 (수요기관코드, 요청인가코드)

STEP. 2 인증서 신청 및 등록

- 기업정보 입력 (수요기관코드, 요청인가코드 등)
- 인증기관 홈페이지 이동
- 인증서 암호 등록
- 인증서 등록 완료

STEP. 3 입찰공고 준비 및 게시

- 희망장비 견적서, 시방서, 규격서, 설치도면 등 구비 (ICT기업 발급)
- 입찰을 위한 공고문 작성
- 자격조건, 금액, 공고일 설정
- 공고일 : 10억 미만(7일)
10억 초과(15일)

STEP. 4 공고 개찰

- 등록시 설정한 개찰일시 이후 개찰 가능

STEP. 8 계약 완료

- 검수완료 및 설치 <나라장터 계약 변경의 경우>
 1. 변경계약서 송신
 2. 변경계약서 응답
 3. 변경계약서 접수

STEP. 7 접수 및 계약체결 통보

- 계약 응답서 접수
최종계약체결 통보
최종 계약서 출력 및 보관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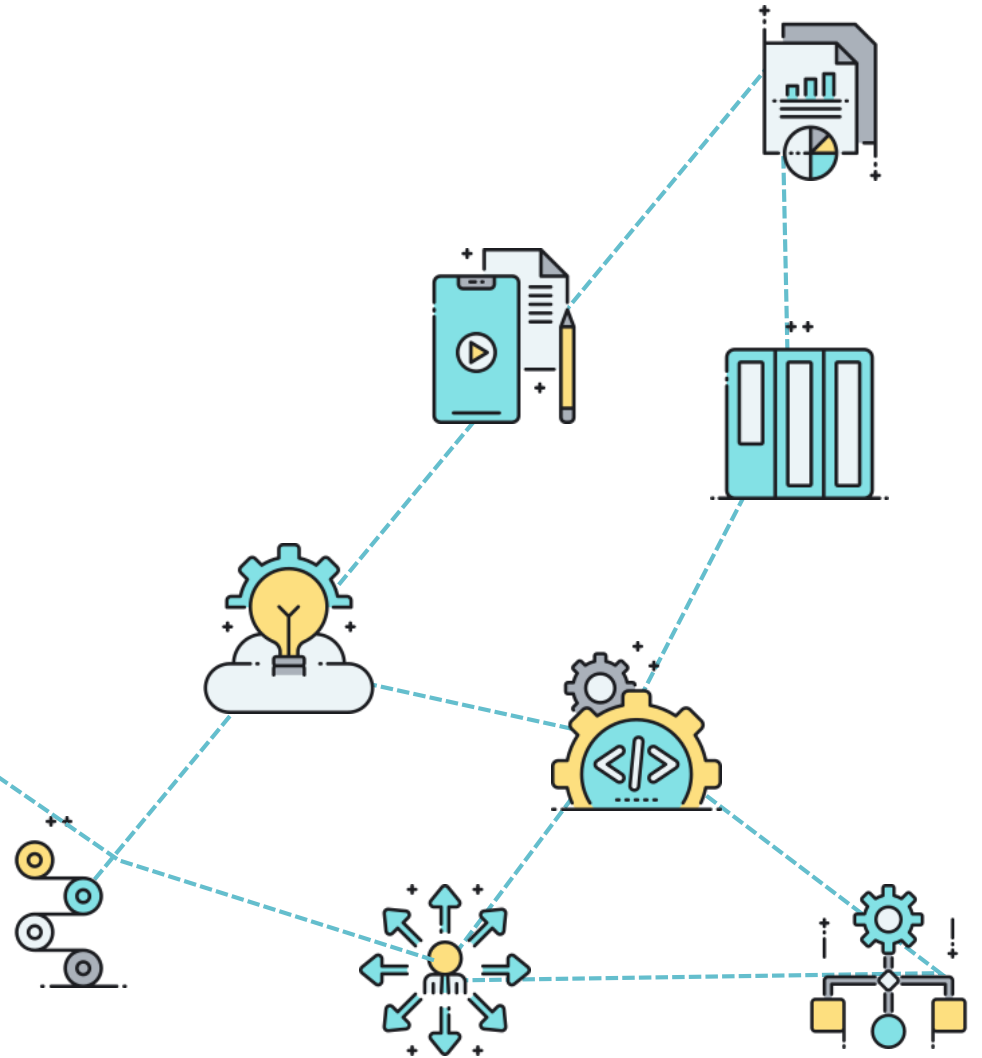
STEP. 6 계약서 초안 송신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계약서 초안 작성
- 계약일시, 완료일자 등 작성

STEP. 5 낙찰자 선정

-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격, 옵션 등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

I. 시설점검 컨설팅



5-1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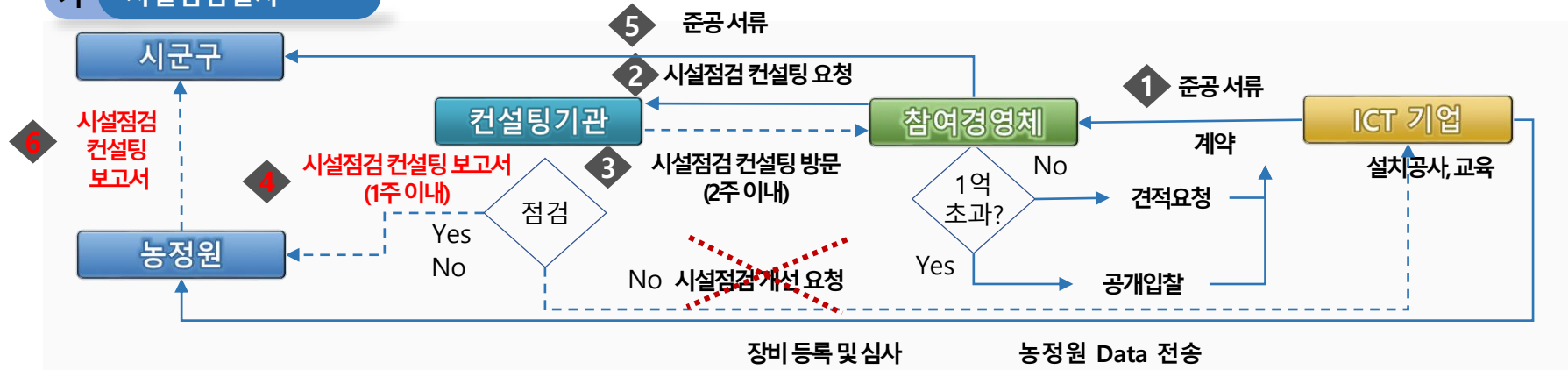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시설점검 프로세스

- 시설점검 컨설팅은 설치가 완료된 농가의 계약서류와 장비 설치상태를 점검함
- 설치된 장비에 대한 능가 활용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 진행

○ 시설점검 프로세스 및 컨설팅 실행 절차

가 시설점검절차



나 시설점검컨설팅 실행절차

설치모니터링	공사보고서 확인	1차 방문	2차 방문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진행 확인 ▪ 설치현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 설치 시방서 ▪ 설계 도면 ▪ 이행보증증권 ▪ 설치 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 문서 확인 ▪ 장비 수량 확인 ▪ 장비 동작 확인 ▪ Data 연동 확인 ▪ 농가 교육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사항 확인 ▪ 농가활용 교육 ▪ 장비활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5-2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시설점검 프로세스

- 시설점검 컨설팅은 설치가 완료된 농가의 계약서류와 장비 설치상태를 점검함
- 설치된 장비에 대한 능가 활용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 진행

가 시설점검 개요

- ❖ 시설점검 컨설팅은 농가의 계약 및 설치과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 지자체에 완료보고 전 시설점검 컨설팅 의무 수행
- ❖ 시설점검 컨설팅은 담당 컨설턴트에게 공사 완료 후 연락하여 진행
- ❖ 컨설턴트 연락 후 14일 이내 방문함으로 급할 경우 미리 일정 조율
- ❖ 시설점검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됨으로 다수의 장비 계약시 사업기간 조율(단순장비는 1회만 실시)

가 핵심 항목

- ❖ 사업계획서 상의 장비종류와 숫자 비교확인
- ❖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여부 확인(농가 협업)
- ❖ 농정원 정보연계 여부 확인
- ❖ 표준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점검(유지보수내용, 계약특수조건, 이행보증증권, 하자보수증권 등)
- ❖ 장비매뉴얼, 비상응대방법, 장비활용 교육수행여부 확인
- ❖ 장비사용상의 불편사항 및 고객요구사항 수렴

5-3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시설점검 프로세스

- 시설점검 컨설팅은 설치가 완료된 농가의 계약서류와 장비 설치상태를 점검함
- 설치된 장비에 대한 능가 활용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 진행

○ 사업 주체별 시설점검 행정절차 및 선정 후 사업 진행 안내

가 컨설턴트

- 설치 현황 파악
- 스마트팜 등록 장비 확인
- 장비 교육 실시 여부
- 정상 가동 여부
- 계약 진행 확인
-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 수의계약, 공개 입찰 유무
- 견적서 내용 확인

나 경영체

- 컨설턴트 기관과 방문 일정 협의
- 서류 준비, 제출
- 컨설턴트 동행 설치 장비 확인(사진)
- 설치 완료 확인서 지자체 제출
- 보조금 집행

다 지자체

-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집행
- 부당집행 사실 확인
- 사후관리 - 현장점검 및 실태 조사
- 추진현황 농식품부 보고

다 필수 제출 서류

- 표준계약서 (매뉴얼 참고)
- 설치내역서(최종견적서) (매뉴얼 참고)
- 제품매뉴얼(사용자설명서) (매뉴얼 참고)
- 시방서 및 설계도면 (매뉴얼 참고)
- 세금계산서 (매뉴얼 참고)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 내용 첨부시 (매뉴얼 참고)
- 설치사진 (매뉴얼 참고)

5-4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농정원 정보 연계

정보연계

- ICT 사업은 공사 종료 후 3년간 농정원에 정보제공이 의무화된 사업
- ICT기업에서 농정원 정보연계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가 농가 적용 규정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 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나 기업 적용 규정

- 스마트 웰빙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센싱정보, 제어정보 등은 농정원의 농식품 ICT융복합 정보공동활용시스템으로 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연계항목 및 연계방법은 정보연계 가이드 참조
 - 정보연계항목(붙임 1)과 같으며, 제어관리시스템 및 생산경영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 부분은 농정원에서 정보연계 실시
- * 단, 정보연계를 위해 시스템 구조 및 지원은 민간 기업에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정보연계
기술컨설팅

- 농정원은 참여기업의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에게 기술지원컨설팅 요청

가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서버에서 농정원에 데이터 전송 기술의 구현이 어려운 경우
- 참여기업 시설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농정원 데이터 전송기술의 구현이 어려운 경우
- 외산장비/해외 본사에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컨트롤러에서 외부 데이터 전송기술의 구현이 어려운 경우
-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및 시설제어 프로그램의 구현 기술이 없는 경우
- 장비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제품 자체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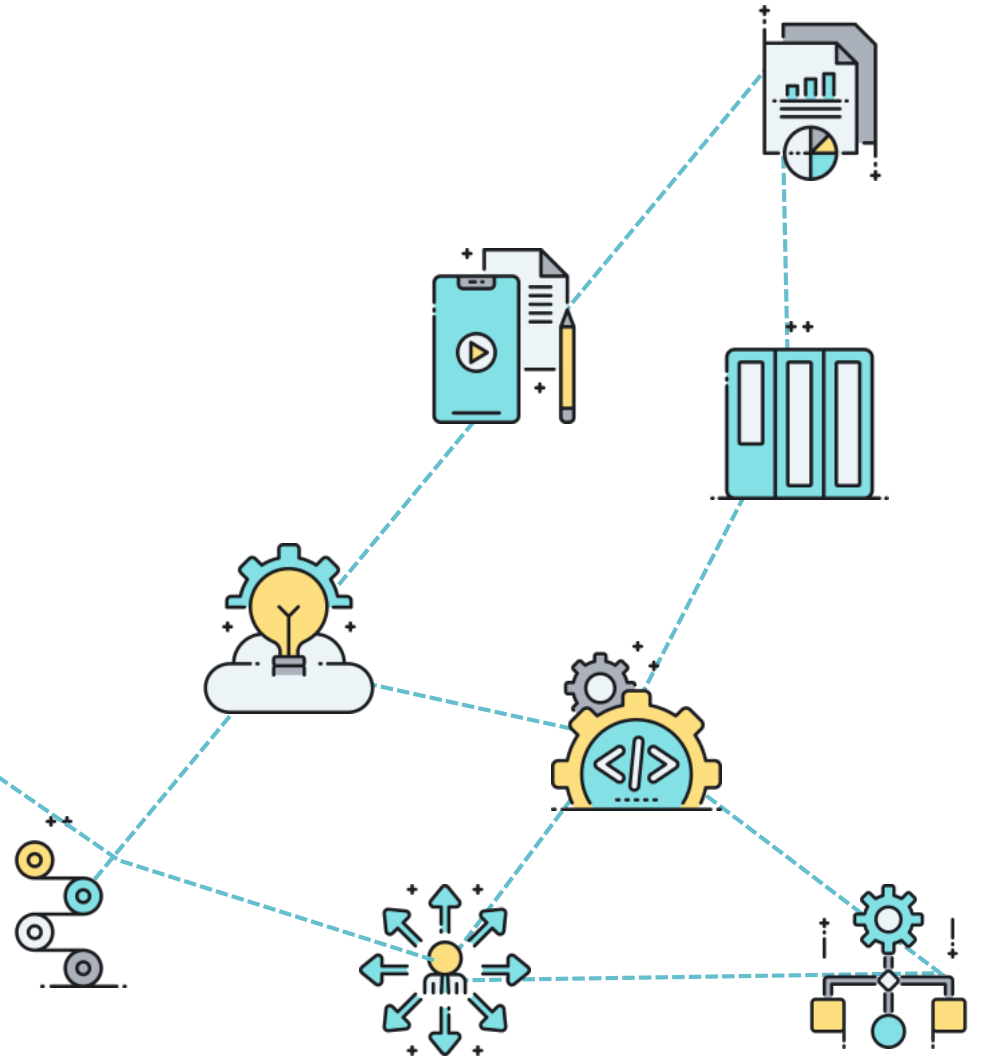
나 지원 방법

- 컨설팅 기관에서 해당 기술을 해결방법에 대한 컨설팅 진행(필요시 간단한 내용은 구현 지원)
-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은 없음

다 기술지원신청

- 컨설팅 기관 : (주)호현에프앤씨 : 010-3306-1229/이성호 대표 (농정원의 공식지원 업무가 절대 아님)

I. 확인점검 컨설팅



6-1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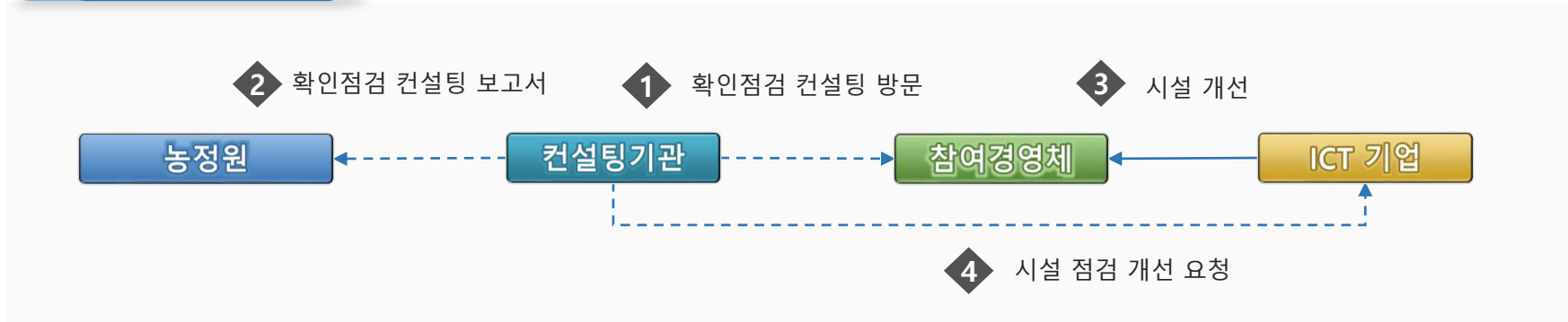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확인점검 프로세스

- 설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설치 종료 후 농가의 생산성적의 변화를 분석

○ 확인점검 프로세스 및 컨설팅 실행 절차

가 사업추진절차



나 확인점검컨설팅 실행절차

6개월 경과 확인	생산성적 수취	농장방문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주기 경과 ▪ 최소 6개월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사육현황 ▪ 사료 사용 현황 ▪ 출하성적 현황 ▪ 생산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모니터링 ▪ Data 모니터링 ▪ 장비 활용 모니터링 ▪ 생산성적 비교 ▪ 장비활용 교육 ▪ 생산성 향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발굴

6-2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 및 절차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절차

확인점검 프로세스

- 설치 종료 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설치 종료 후 농가의 생산성적의 변화를 분석

가 확인점검시 체크사항

- 시설 점검 방문이 이루어지고 최소 6개월 경과 후 시행
- 시설 점검 시 보완 사항 수행 여부 확인
- 시설 전.후 생산성 변화 분석 - 생산성 현황 자료 참조
- 장비 활용의 적정성, 운영 실태 점검
- 우수 사례 발굴

나 필수 제출 서류

한 우	낙 농	양 계	양 돈
사육개체 관리현황	사육개체 관리현황	출하대금 정산서	생산성적 관련데이터 (피그플랜, 한돈팜스)
사료거래 실적	사료거래 실적	생산경영일지 (농장일보, 파일)	사료거래실적
도체등급 확인서	월별 납유 및 납품 실적	사료거래실적	도체등급확인서
출하대금 정산서 (출하장, 도축장)	연간 검정데이터		

감사합니다.

